

2021년도 2분기 (정기) 노사협의회 회의록

작성자	근로자위원 간사	추희연
	사용자위원 간사	심희경

회의일시	2021. 6. 23.(수) 10:30~11:30
회의장소	비대면 화상(zoom) 및 대면회의(다함께실) 병행
참석자	-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 3명(강진아, 전현정, 심희경), 근로자위원 3명(임은주, 추희연, 현금숙) 전원 참석
개회	- 사용자위원 3명, 근로자위원 3명 전원 출석 -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여 개회
보고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분기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및 의견에 대한 이행보고 (2021년도 1분기 노사협의회 회의록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도 1분기 노사협의회 의견에 따라 아이돌보미 대상 정서지원 프로그램 대상을 센터 비상근 종사자 전원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다문화 가족 대상 프로그램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센터 내부 다문화 인력을 활용하여 사업 홍보 통역 실시 예정 2021년도 상반기 사업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의자료 순서에 따라 2021년도 사업실적 및 운영 현황을 보고함. 주요 현황 보고(회의자료 순서에 따라 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상반기 센터 수상 현황. 도봉구 공동육아나눔터 창동2호점 공사 관련 현황, 방역관리현황, 2021년도 예산전용 보고, 시설개선공사 완료 보고, 인사 및 조직 변경 현황 등을 보고함.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현장 방문조사 결과 및 사후 조치상황을 보고하고, 시정조치에 따라 최저임금 주지자료를 공유함. ▶ 방문교육지도사 전원의 의견청취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하였음을 보고함. 기타보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분기 노사협의회 개최공고문을 통해 고충처리 창구 활성화를 위한 전용 메일을 재안내함.
의결사항 및 취합의견	- 아이돌보미로써 현장에서 겪는 사례에 비추어 다문화 부모 대상 교육 및 아동 대상 생활 예절, 생활 습관 교육이 시급함을 느낌. 부모교육 및 생활습관 교육의 부재로 인해 다른 사회구성원들로부터 차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센터에서 대상자를 확대하고 양질의 교육제공이 필요함. 아울러 비다문화 가족의 다문화에 편견해소 교육도 병행하여, 다문화 아동들이 사회의 낙인으로 인해 상처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이같은 인식개선을 통해 우리 아이들 모두가 혐오, 배제, 낙인받지 않는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고자 노력할 필요가 있음(현금숙 위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로 인해 신규 결혼이민자 유입이 감소한 듯 보임. 소수라도 우리 도봉구에 유입되는 결혼이민자들이 관련 정보를 취득하고 같은 이민자들을 만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센터 홍보 확대가 필요함. 우리 위원님들이 동네에서 일선에서 만나는 이웃들께도 적극적 홍보를 당부드림(추희연 위원) - 아이돌봄지원사업 연계율과 서비스 대상이 작년 대비 증가하지 않았음. 하반기에 홍보를 확대하여 사업의 인지도를 높여나갈 필요가 있을 듯함(심희경 위원). - 아이돌봄서비스사업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상담프로그램은 하반기에 방문교육지도사님들 중 희망하시는 분들께도 확대하여 센터의 돌봄종사자들 모두가 심리적 안정과 힐링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음(전현정 위원) - 사진과 내용이 충실하여 가독성높은 회의자료를 통해 센터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음. 차기 회의는 부디 코로나가 진정되어 얼굴을 마주하고 회의할 수 있길 바람(임은주 위원). - 센터의 성과와 영광은 모두 함께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과 종사자들 덕분이라고 생각함. 앞으로도 지금처럼 힘을 실어주시길 당부드림(강진아 위원).
<p style="text-align: center;">폐 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서에 따른 진행 후 폐회
<p style="text-align: center;">기타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휴가지원사업’이라고 근로자가 휴가를 신청하면 회사와 정부에서 50%의 휴가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다고 함. 본 센터에서 적용 가능한 사업인지 확인해주셨으면 함(임은주 위원).

회의사진

